

제 정 : 2021.01.04.

일부개정 : 2021.05.27.

일부개정 : 2021.09.28.

일부개정 : 2022.03.24.

일부개정 : 2023.06.29.

일부개정 : 2024.09.26.

ESG 위원회 규정

2024.09.26.



ESG 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48 조 및 이사회 규정 제 9 조에 의한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

제 3 조 (구성 및 위원장)

- ①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권한 및 기능)

-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 8 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의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
- ②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현황, 주주가치, 주주권익 및 ESG 활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간사에게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, 주주가치, 주주권익 및 ESG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5 조 (의무)

-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간사로부터 매 분기 1 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며, 회사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6 조 (소집)

-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를 위해 분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개최일 3 일 전까지 문서,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명시된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해 심의 및 결의하고 그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.
 - 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
 - 2. 전호에 규정된 대규모 내부거래의 거래금액 기준 미만이라도 위원장이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내부거래
- ② 위원회는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한다.
- ③ 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아래 사항 중 주주가치 및 주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후 그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.
 - 1. 신주의 발행, 자본의 감소 및 주식의 소각,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
 - 2.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
 - 3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 - 4.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 - 5. 주주 외 제 3 자에 대한 주식관련사채(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)의 발행
 - 6.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
- ④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환경(E), 사회(S), 지배구조(G) 등 비재무적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결의한다.
 - 1. 기후변화대응을 포함한 친환경경영, 사회책임경영 등 ESG 경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 - 2. ESG 활동 관련 규정 또는 헌장 등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
3. 기타 ESG 관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⑤ 위원회에 보고할 ESG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
 2.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
 3. 기타 ESG 관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고 및 조치

제 11 조 (이사회 보고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전심의 검토된 안건이 이사회에 부의사항으로 상정될 경우, 사전 검토 결과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12 조 (간사)

-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 처리한다.

제 13 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)
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